

---

# 외국인투자 관련 조세정책동향

## [2022년 하반기]

---

2022. 10.

본 자료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국내 조세정책·동향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KOTRA 종합행정지원센터 투자종합상담실 국세청 과견관(02-3497-1059)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목 차



<b>I. 22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b>	<b>1</b>
1. 추진 배경	1
2. 기본 방향	1
3. 주요 추진과제	2
<b>II. 2022 세제개편(안)</b>	<b>10</b>
1. 주요 내용	10
2. 상세 내용	13

# I. 2022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 1 추진 배경

- (경제여건)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 확산, 주요국 통화 긴축 가속화 등 대외여건 악화로 경기 둔화 가능성 및 민생경제 부담 가중 예상  
\* IMF '22년 경제성장률 전망 변화(%): [한국] ('21.10.) 3.3 → ('22.1.) 3.0 → ('22.4.) 2.5
- (국민요구) 국세 행정의 투명성·책임성·편의성 제고에 대한 국민 기대  
\* 국민 설문조사('22.7월) : 1위 과세투명성·책임성 강화(32%), 2위 납세자 불편해소(29%)

## 2 기본 방향

- 국세청은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비전으로 이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4대 운영방향\* 및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 ①납세편의 제고, ②민생경제 지원, ③공정과세 실현, ④소통문화 확산
- 「국세행정 역량강화TF」를 신설하여 실용과 소통을 기반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하는 등 차질없는 추진을 뒷받침



### 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 구현

- (디지털 납세환경) 사용자 맞춤형 홈택스 개편, 모바일 서비스 확대, AI세금비서\*(가칭) 도입 등 모두에게 쉽고 편리한 **지능형 홈택스** 구축
  - \* 납세자별 신고·납부 일정 및 환급금 안내, 민원처리결과 조회 등의 서비스 제공
- (수요자 중심) 근로자의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한 간소화 자료를 통해 **윈스톱**으로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일괄제공서비스** 전면 도입
  - \* [지난해 시범운영 결과] 간소화자료 조회 **85만 건(8.5%) ↓**, 다운로드 **80만 건(9.7%) ↓**
- (대외소통 확대) 세무지원 소통의 달 행사 등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발굴·해소하고, 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소통 확대
  - 국민참여단\* 활동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관점에서 납세서비스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과정에도 **국민의견** 적극 반영
  - \* 국세행정 전 분야에 국민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해 '21년 신설한 국민참여 기구

### ②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

- (민생지원) 영세납세자를 위한 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완화 등 전방위적 지원을 확대하고, 손실보상 등을 위한 **과세정보** 적극 제공
  - ▶ (손실보상 지원) 코로나19 피해 손실 보상을 위한 과세정보를 적법한 범위 내 적극 제공
  - ▶ (검증부담 완화) 영업제한·매출감소 소상공인\* 신고내용 확인 한시 면제 및 정기조사 유예
    - \* 영업제한·매출감소 등 피해로 인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수급한 사업자(332만 명)
  - ▶ (납부기한 연장 등) 코로나19, 수해 피해사업자를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 연장
  - ▶ (납세담보 면제) 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을 위해 담보면제 기준금액 상향(1억 원→1.5억 원)
- (환급금 등 조기지급) 영세사업자, 저소득 근로가구 등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근로·자녀장려금 등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

### ③ 역동적 혁신성장을 국세행정 차원에서 뒷받침

- (신산업 지원) 반도체 등 초격차 전략기술, 녹색 신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세무불편 해소를 위한 전용 상담시스템 구축

\*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환급금 조기지급, R&D세액공제 우선 심사 등

#### 세정지원 대상 산업

구 분	대상 산업
초격차 전략기술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수소, 5G/6G, 바이오, 우주항공 등
녹색 신산업	기후테크, 환경 IoT, 바이오 가스 등 5대 녹색 신산업
주력산업 혁신	디지털 혁신기업, 저탄소 전환 지원기업,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전환

-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각 지방청에 M&A지원 전담반을 설치하여 관련 세무쟁점을 사전에 파악·지원

- (중소기업 지원) 기존 일부 협약기업에만 제공하던 세무컨설팅을 공제·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전면 확대(붙임)

####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확대 개편 주요내용

기 존	개 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협약체결 법인(수입금액 1백억~1천억)</li> <li>▶ (범위) 협약법인(1~2년) 중 전 세목</li> <li>▶ (방식) 연1회&amp;3일 이내 일정 협의 및 컨설팅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모든 중소기업(수입금액 1백억~1천억)</li> <li>▶ (범위) 기간제한 없이 공제·감면 위주</li> <li>▶ (방식) 매월신청, 다음달 말일까지 답변</li> </ul>

- (세제혜택 안내) 빅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판단모형\*」을 이용하여 세액공제·감면 미활용 중소기업에 적용 가능 세제 혜택을 직접 안내

\* 업종, 매출, 독립성 요건 등을 전산 분석하여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 (연구개발 지원)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사 진행상황을 실시간 확인·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시스템\* 구축

\* 사전심사 진행과정 안내 세분화(기술·비용심사) 및 각 단계별 의견 교환

- (창업 지원) 신종업종 창업자의 성실납세를 돕기 위한 세정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해 성장단계별 세무안내

#### 4 국세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 (과세 전 검증 강화) 고액 등 중요사건의 경우 최종 처분유지를 담당하는 송무조직에서 과세 전 법리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절차 신설
  - 선례가 없거나 기존 해석례와 배치되는 심판·판결이 선고된 경우 과세기준자문\* 회신내용에 신속히 반영해 반복인용 방지
- \* 법령해석에 납세자와 이견이 있는 경우 처분청의 신청을 통해 과세 전에 자문하는 제도
- (납세자 권리보호)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의견진술권\* 및 이의신청 결정서 공개를 확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세무조사 가이드북 전면 개정
  - \* (현행) 권리보호요청·고충민원만 인정 → (개선)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장부일시보관 연장 추가
- (데이터 활용 확대) 국내 최초로 모든 분야 데이터 결합이 가능한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정책 연구 등 활용 확대
  - \* 국내 최초 데이터전문기관(금융분야, '20.12월)·결합전문기관(非금융분야, '22.4월) 동시 지정
  -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역상권 활성화 등 공익목적 과세정보 요구에 대해 법 규정 내 신속 제공

#### 5 신중한 세무조사·세원관리를 통한 공정과세 구현

**'22년 세무조사 운영방향**

신중한 조사운영	탈세 엄정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조사규모 축소기조 유지(14,000건)</li><li>✓ 「간편조사 조사시기 선택제」 도입</li><li>✓ 정기조사 및 간편조사 비중 확대</li><li>✓ 세무조사 시 적법절차·적법과세 강화</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세금 없는 부의 이전, 기업자금 사유화 등 불공정 탈세 엄단</li><li>✓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민생침해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에 강력 대응</li><li>✓ 가상자산,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신중 탈세 검증 강화</li></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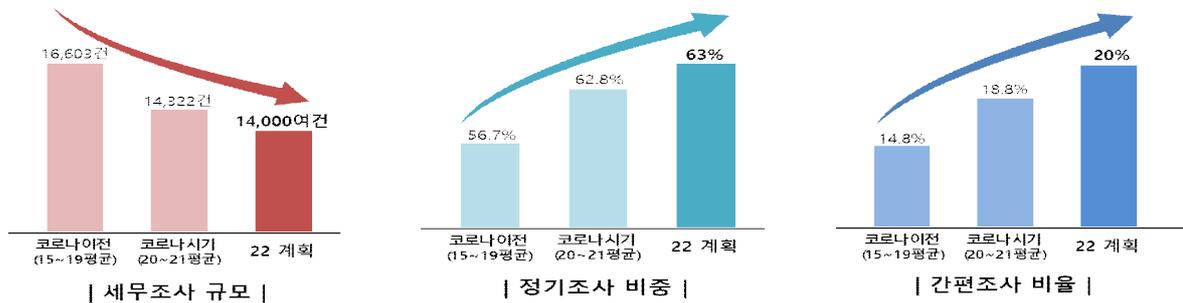
→ 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를 유지하되, 민생침해 탈세, 지능적 역외 탈세 등 불공정 탈세에 조사역량 집중하여 엄정 대응

- (조사시기 선택제 확대) 「조사시기 선택제도\*」를 간편조사에 전격 도입, 중소기업 납세자 스스로 조사부담이 적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 : 납세자에게 희망시기(1~3순위)를 신청 받아 조사시기 결정

- (조사부담 완화) 기업이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납세자가 체감하는 조사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

- 납세자가 조사시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 비중을 과거 대비 상향하여 기업 경영의 안정성 제고
- 보다 많은 중소기업 납세자가 조사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간편 조사를 법인·개인 조사의 20% 수준까지 확대 운영



- (탈세 엄정 대응) 불공정 탈세, 민생침해 탈세, 역외탈세,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한 신종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대응

- 해외 현지법인 출자를 가장한 법인자금 편취, 고정사업장 은폐를 통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등 역외탈세 혐의자 44명 조사(2월)
- 대출도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금수저 엄카족, 미성년 자녀의 고가 재산 취득 등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 세무조사(2월)
-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며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188명 세무조사 착수(5월/9월)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배달대행, 불법담합업체, 불법대부업자, 보험사기 병원 등

- 벌폐입찰로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 변칙 자본거래로 부의 편법 대물림 탈세 등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자 32명 조사(9월)

- (고액·상습체납) 체납자 유형별 상세 분석을 통해 체납자별 최적의 정리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추적조사 강화
- (외국인 부동산 관리)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외국인 등의 양도세 비과세 부당 적용 및 다주택 증가 회피 혐의 중점 검증
  - 외국인의 다주택 실태 파악을 위해 주택 양도시 '세대별 주택보유 현황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6 역점과제 추진을 위한 TF 구성

- (목적) 국세행정 전반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
- (구성) 4대 운영방향의 뒷받침을 위해 ①민생경제 지원, ②납세불편 해소, ③과세투명성·책임성 강화, ④조직문화 개선 분과 설치
- (대내외 협업) 현장 적합성 높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과정에 경제·납세자단체, 세무대리인 등 민간 및 일선직원\* 참여
  - \* 연령, 직급, 입직경로, 경력, 지역, 업무분야, 성별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발
  - 분과회의 참여, 현장의견 제시, 추진과제 검토 등 역할 수행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체계



- (과제추진) 소관과제별 세부이행방안·실행계획을 마련\*·실행
  - \* (1차 발굴) ~'22.8월 → (2차 발굴) ~'22.11월 → (발표) '23.1월

※ 「2022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http://www.nts.go.kr)) < 보도자료('22.7.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도 개요**

□ **(추진 배경)** 중소기업의 세무검증·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20년 7월부터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 수입금액 100억 원~1,0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선정된 법인과 컨설팅 협약을 맺고, 1~2년간 정기 또는 수시 컨설팅 제공

- 세무컨설팅을 세무간접으로 인식하는 등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많지 않았고,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조세절감 효과가 큼에도 세액 공제·감면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세무컨설팅 제도를 법인세 공제·감면 위주의 컨설팅으로 전면 개편함('22.8월~)

◆ 수입금액 100억~1,000억 미만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22.6.13.~6.16. 국세청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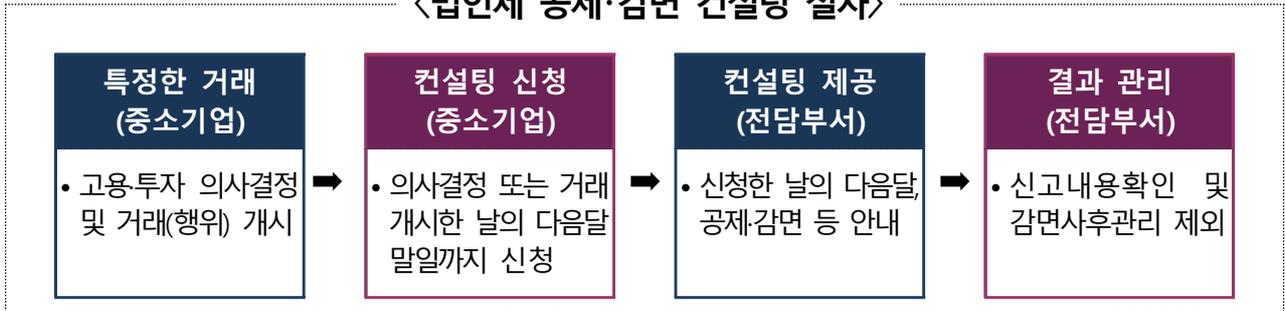
- ▶ 설문에 응답한 기업(532개)의 **62%**는 세무신고시 「**세액공제·감면의 적용**」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함
  -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한 기업(295개)의 경우 「**세액공제·감면의 적정 여부**」(46.5%), 「**공제·감면세액 계산**」(21.0%)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기업(237개)의 경우 「**세액공제·감면 대상인지 몰라서**」(46.5%), 「**어렵고 복잡하다**」(22.4%)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함

□ **(제도개요)** 새롭게 개편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이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하여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제출서류 등을 문의하는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서면으로 답변하는 제도로서

-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와 금액을 안내함으로써 고용·투자를 유인하는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2. 제도 주요 내용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절차〉



- (신청대상)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상 ~ 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4만여 개)는 누구나 신청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중소기업으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인 법인

- (신청기한) 세액공제·감면과 관련되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 홈택스(www.hometax.go.kr) 접근경로: 신청/제출 ▶ 일반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 "컨설팅" 입력 후 조회하기 ▶ 인터넷 신청

-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부분은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컨설팅 제공)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중소기업이 컨설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액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 (제도 혜택) 컨설팅 내용에 따라 신고한 경우 법인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된다.

### 3. 기존 세무컨설팅 제도와 차이

	<기존 세무컨설팅 제도>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컨설팅 대상법인	• 수입금액 100억~1,000억 법인 중 신청을 받아 협약을 맺은 법인		• 공제·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모든 중소기업(100억~1,000억)
컨설팅 범위	• 협약기간(1~2년) 중 전 세목		• 세액공제·감면 위주 컨설팅
컨설팅 신청기간	• 매년 7~9월		• 고용투자 등 사유 발생시(매월 신청) 또는 경정청구 전
컨설팅 방식	• 기업과 일정 협의(연 1회, 정기) 또는 기업의 요청에 의한 수시 제공		•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컨설팅 제공

- (컨설팅 대상 확대) 기존 세무컨설팅 제도는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내부기준에 따라 선정된 법인과 협약을 맺고 전 세목에 걸쳐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이었으나
  - 이번에 개편되는 제도는 컨설팅 신청 대상 수입금액 기준은 유지 하되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 하여 공제·감면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컨설팅 방식 개선) 고용·설비투자 등 세액공제·감면 관련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때에 컨설팅을 신청 하도록 하고,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컨설팅을 제공한다.
- (기존 컨설팅 협약법인) 기존 세무컨설팅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협약체결법인에게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기존 방식으로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종전의 혜택을 계속 제공한다.

## Ⅱ. 2022 세제개편(안)

### 1 주요 내용

#### 가.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법인법 § 55)

-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여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중소·중견기업이 10퍼센트 세율을 적용받는 과표구간을 2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함.

#### 나.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법인법 § 15·21 외)

-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대신 해당 배당소득의 95퍼센트에 대해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으로서 외국자회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과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범위를 확대함.

#### 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신설(법인법 § 94의2②)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대해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라.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간 확대(조특법 § 18)

-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50퍼센트 감면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 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간 폐지(조특법 § 18의2)

- 외국인근로자가 국내근무 시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선택하여 소득세로 납부할 수 있는데, 종전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만 적용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적용기간을 폐지하여 항구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소득법 § 119의3, 법인법 § 93의3 신설)**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사. 혼성금융상품거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신설(국조법 § 25②)**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시 상품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아.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등 적용을 위한 신청절차 보완(소득법 § 156의2·6, 법인법 § 98의4·6)**

-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실질귀속자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소득지급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귀속자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비거주자에 대해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자.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범위 확대(국조법 § 16②)**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와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의 제출의무뿐만 아니라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의무도 면제함.

**차. 이전가격 관련자료의 국내보관 의무 신설(국기법 § 85의3①)**

- 자료 해외이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 가능한 이전가격 관련 자료는 국내의 납세지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 의무 규정을 신설함

### 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 7)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회복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과세형평 등을 위해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10% 감면) 폐지

### 타.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조특법 § 29의8 신설)

- 기업의 고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등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 및 일원화하여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일가정 양립의 지원을 위하여 정규직 전환자 및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하여 추가공제를 적용함.

### 파.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소득법 § 55①)

- 6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 1,200만원 이하를 1,400만원 이하로 하고, 15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하여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함.

### 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소득법 § 59)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할 때에 총급여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종전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하여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세부담 감소 혜택을 완화함.

※ 「2022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누리집 ([www.moef.go.kr](http://www.moef.go.kr)) < 보도자료('22.7.2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법령을 실제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안의 확정 여부, 수정사항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 상세 내용

### (1)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법인법 §55)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법인세율 과세체계 ○ 세율 및 과세표준	<input type="checkbox"/>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 1)최고세율을 25% → 22%로 인하, 2)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 까지 10% 특례세율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 <th>세 율</th> </tr> </thead> <tbody> <tr> <td>2억원 이하</td> <td>10%</td> </tr> <tr> <td>2~200억원</td> <td>20%</td> </tr> <tr> <td>200~3,000억원</td> <td>22%</td> </tr> <tr> <td>3,000억원 초과</td> <td>25%</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	2~200억원	20%	200~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 <th colspan="2">세 율</th> </tr> </thead> <tbody> <tr> <td>5억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0% (중소·중견기업)</td> <td>20%</td> </tr> <tr> <td>5~200억원</td> <td></td> <td></td> </tr> <tr> <td>200억원 초과</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22%</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 율		5억원 이하	10% (중소·중견기업)	20%	5~200억원			200억원 초과		22%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																						
2~200억원	20%																						
200~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과세표준	세 율																						
5억원 이하	10% (중소·중견기업)	20%																					
5~200억원																							
200억원 초과		22%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중견 기업*은 10% 특례세율 적용 제외 * 소비성 서비스업은 현행과 동일하게 제외 ❶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 ❷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 이상																						

〈개정이유〉 법인세 부담 경감 및 투자·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 ①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법인법 §15·21·41·57·57의2 개정, §18의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input type="checkbox"/>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p> <p>※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현행과 동일하게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p> <p>○ (익금불산입 대상)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p> <p>○ (해외자회사 요건) 지분을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p> <p>*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는 5%</p> <p>* 해외자회사의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인한 배당은 지분율에 관계없이 익금불산입 적용</p> <p>○ (익금불산입 배당소득 범위) 이익의 배당금, 잉여금의 분배금, 의제배당</p> <p>- ①특정외국법인(CFC)의 유보소득 배당간주를 적용받은 경우, ②혼성금융상품*, ③간접투자회사등(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은 적용 제외</p> <p>* 국외에서는 이자비용으로 취급되나, 국내에서는 배당소득으로 간주</p> <p>○ (익금불산입률) 95%</p> <p><input type="checkbox"/> 해외자회사(기존법인을 인수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p> <p>○ 취득원가 - 인수전 이익잉여금에서 배당한 금액 상당액 ※구체적인 범위 금액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p>

<개정이유>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2.12.31. 이전 배당받은 분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공제한도 초과로 이월된 세액 포함)

②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요건 완화  
(법인법 §57⑤, 법인령 §94⑨)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 지분율 25%* 이상,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는 5%	<input type="checkbox"/> 해외자회사 요건 완화  -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좌 동)  ※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

**<개정이유>**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대상 해외자회사 요건과 일치

**<적용시기>** '23.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3)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신설  
(법인법 §94의2②·③)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자료 제출 의무  ○ (제출자료)  <b>①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b> - 외국법인연락사무소 기본사항, 외국 본사 및 국내 다른 지점 현황, 국내거래처 현황 등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 (제출시기) 다음연도 2월 10일	<input type="checkbox"/> 제출 자료 추가   <b>① (좌 동)</b>   <b>②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b>  ○ (좌 동)

<개정이유> 외국법인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4)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등(조특법 §18)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외국인 기술자* 또는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에 따른 기술 제공자</li> <li>** 해외 연구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후 국내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취업</li> </ul> </li> <li>○ (감면율) 5년간 50%</li> <li>○ (적용기한) '23.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시 (3년간 70%, 이후 2년간 50% 감면) 적용기한: '22.12.31.</li> </ul> </li> </ul>	<input type="checkbox"/>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10년간 50%</li> <li>○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시 (3년간 70%, 이후 2년간 50% 감면) 적용기한 종료</li> </ul> </li> </ul>

〈개정이유〉 해외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3.1.1. 현재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분에도 적용

(5)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폐지(조특법 §18의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 용) 19% 단일세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소득세율(6~45%) 선택 가능</li> <li>-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li> </ul> </li> <li>○ (적용기간)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li> <li>○ (적용기한) '23.12.31.</li> </ul>	<input type="checkbox"/> 적용기간 폐지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ul> </div> <p style="text-align: center;">&lt;삭 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ul>

<개정이유> 외국인 투자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3.1.1. 현재 특례를 적용받고 있거나 이전에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적용

(6)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소득법 §119의3, 법인법 §93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input type="checkbox"/>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p> <p>*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이자·양도소득</p> <p>① (대상채권) 국채(국채법§5①), 통화안정증권</p> <p>② (투자방법)</p> <p>i) (직접 투자) 국내 보관기관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고 국채 등 투자</p> <p>ii) (간접 투자) 적격외국금융회사*를 통해 국채 등 투자</p> <p>* 적격외국금융회사 자격, 승인절차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p> <p>③ (신청절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비과세 적용 신청</p> <p>④ (원천징수의무 특례) 국외공모펀드의 투자자 중 거주자·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p> <p>-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고 해당 투자자가 직접 신고·납부</p>

**<개정이유>** 국채 등에 대한 수요 기반 확대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지급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혼성금융상품거래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신설  
 (국조법 §25②·85 신설, 국조령 §104 신설)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혼성금융상품 거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인과 혼성금융상품* 거래를 하여 지급한 이자</li> <li style="margin-left: 20px;">* 국내에서는 부채로 보나, 국외에서는 자본으로 취급</li> <li>○ (적용요건) 해당 이자비용이 적정기간* 내 국외특수관계인 소재국에서 과세되지 않음</li> <li style="margin-left: 20px;">* 내국법인이 이자를 지급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li> <li>○ (서류제출) 혼성금융상품 거래를 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 확정 신고시 이자비용조정명세서를 제출</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input type="checkbox"/> 거래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서류 제출 의무 명확화</li> <li>○ 이자비용조정명세서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 상품별 3천만원 한도</li> <li>- (기한내 미제출시) 혼성금융 상품별 2천만원</li> <li>- (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혼성금융상품별 1천만원</li> </ul>

<개정이유> 혼성금융상품거래 신고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8)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등 적용절차 보완  
 (소득법 §156의2·6, 법인법 §98의4·6, 소득령 §207의2·8, 법인령 §138의4·7)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등 적용 신청</p> <p>○ (신청절차) 비과세·면제 등 신청서를 소득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세무서장에 제출</p> <p>- (첨부서류) 거주자증명서</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경정청구) 실질귀속자 등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p> <p>- (첨부서류) 비과세·면제 등 신청서, 거주자증명서</p>	<p><input type="checkbox"/> 조세조약상 비과세 등 적용 신청 서류 및 절차 보완</p> <p>○ (좌 동)</p> <p><b>① 첨부서류 추가</b></p> <p>- 외국법인 설립 및 사업, 국내원천소득 관련 서류 등</p> <p><b>② 절차 보완</b></p> <p>- 세무서장은 비과세등 요건 미충족 또는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결정·경정</p> <p>- 세무서장은 요건 충족 여부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서류 보완 요청 가능</p> <p>- 소득지급자 등은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자료 제출 요구 가능</p> <p>○ (좌 동)</p> <p>- (첨부서류 추가) 외국법인 설립 및 사업, 국내원천소득 관련 서류 등</p>

<개정이유>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비과세 등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9)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면제요건 신설 등  
(국조법 §16②, 국조령 §36)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면제</p> <p>*①국제거래명세서 ②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 손익계산서 ③정상가격 산출방법신고서</p> <p>○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제거래명세서 면제</p>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p>○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 합계 10억원 이하·용역거래 금액 합계 2억원 이하인 경우 요약손익계산서 면제</p> <p>○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재화거래금액 합계 50억원 이하·용역거래금액 합계 10억원 이하</li> <li>-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 합계 10억원 이하·용역 거래금액 합계 2억원 이하</li> </ul>	<p><input type="checkbox"/> 제출면제 범위 확대</p> <p>○ 면제 범위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금액 합계 5억원 이하, 용역거래금액 합계 1억원 이하, 무형자산거래금액 합계 1억원 이하</li> </ul> <p>○ 면제요건에 “무형자산거래금액 합계 2억원 이하”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제요건에 “무형자산거래금액 합계 10억원 이하” 추가</li> <li>- 면제요건에 “무형자산거래금액 합계 2억원 이하” 추가</li> </ul>

**<개정이유>** 국제거래 관련 납세협력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0) 이전가격 관련 자료의 국내보관 의무 신설(국기법 §85의3①)

현 행	개 정 안
<p>□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의무</p> <p>○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 작성하여 보관</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이전가격 관련 자료의 국내 보관 의무 신설</p> <p>○ (좌 동)</p> <p>○ 다만, 이전가격 관련 자료는 국내 보관 필요</p> <p>- (대상 자료) 이전가격세제 적용을 위해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 요구 가능한 자료*</p> <p>* (국조법 §16④, 국조령 §38①) 법인의 조직도 및 사무 분장표, 자산의 양도·매입 등에 관한 계약서 등</p> <p>- (보관 장소) 납세지*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p> <p>* (거주자) 주소지, 거소지 (내국법인)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 (비거주자·외국법인) 해당 국내 사업장 소재지</p>

<개정이유> 자료 해외이전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3.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1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7)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업종) 제조업 등 48개  ○ (감면율) 5~30%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및 일부 업종 감면율 변경  ○ (좌 동)  ○ (좌 동)	
본점 소재지	업 종	감면율(%)		* 특례 폐지  ○ '25.12.31.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	
	▪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	20	-	
지방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5	
	▪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	30	15	
*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수도권 중기업은 10% 감면  ○ (적용기한) '22.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2)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9의8 신설)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 제도</p> <p><b>① 고용증대 세액공제 (§29의7)</b>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3">구 분</th> <th colspan="4">공제액 (단위:만원)</th> </tr> <tr> <th colspan="2">중소 (3년 지원)</th> <th>중견 (3년 지원)</th> <th>대기업 (2년 지원)</th> </tr> <tr> <th>수도권</th> <th>지방</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상시근로자</td> <td>700</td> <td>770</td> <td>450</td> <td>-</td> </tr> <tr> <td>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등</td> <td>1,100</td> <td>1,200</td> <td>800</td> <td>400</td> </tr> </tbody> </table> <p>* 청년 연령범위(시행령): 15~29세</p> <p><b>②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0의4)</b> : 고용증가인원 ×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 공제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중소 (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상시근로자 (2년 지원)</td> <td>50%**</td> </tr> <tr> <td>청년*, 경력단절여성 (2년 지원)</td> <td>100%</td> </tr> </tbody> </table> <p>* 청년 연령범위(시행령): 15~29세 **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의 서비스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75%</p> <p><b>③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29의3①)</b> :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 ×</p>	구 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 (3년 지원)		중견 (3년 지원)	대기업 (2년 지원)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등	1,100	1,200	800	400	구 분	중소 (공제율)	상시근로자 (2년 지원)	50%**	청년*, 경력단절여성 (2년 지원)	100%	<p><input type="checkbox"/>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단순화</p> <p>○ (적용대상) 모든 기업* * (제외) 소비성 서비스업</p> <p>○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3">구 분</th> <th colspan="4">공제액 (단위:만원)</th> </tr> <tr> <th colspan="2">중소 (3년 지원)</th> <th>중견 (3년 지원)</th> <th>대기업 (2년 지원)</th> </tr> <tr> <th>수도권</th> <th>지방</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상시근로자</td> <td>850</td> <td>950</td> <td>450</td> <td>-</td> </tr> <tr> <td>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td> <td>1,450</td> <td>1,550</td> <td>800</td> <td>400</td> </tr> </tbody> </table> <p>- 우대공제 대상인 청년 연령 범위* 확대, 경력단절여성을 우대공제 대상에 추가</p> <p>* 청년 연령범위(시행령): 15~34세 ** 일부 서비스업종 우대는 폐지</p> <p>-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을 추징</p> <p>○ (추가공제) :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자</p>	구 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 (3년 지원)		중견 (3년 지원)	대기업 (2년 지원)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450	1,550	800	400
구 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 (3년 지원)		중견 (3년 지원)	대기업 (2년 지원)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등	1,100	1,200	800	400																																																	
구 분	중소 (공제율)																																																				
상시근로자 (2년 지원)	50%**																																																				
청년*, 경력단절여성 (2년 지원)	100%																																																				
구 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 (3년 지원)		중견 (3년 지원)	대기업 (2년 지원)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450	1,550	800	400																																																	

공제율

구 분	공제율	
	중소	중견
경력단절여성 (2년 지원)	30%	15%

- ④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30의2)  
: 정규직 전환 인원 × 공제액  
\* 전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시

구 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 (1년 지원)	1,000	700

- ⑤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29의3②)  
: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 공제율  
\* 전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시

구 분	공제율	
	중소	중견
육아휴직 복귀자 (1년 지원)	30%	15%

인원 × 공제액

\* 전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시

구 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 (1년 지원)	1,300	900
육아휴직 복귀자 (1년 지원)		

- 전환일·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금액 상당액 추정

〈개정이유〉 기업의 고용 확대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23년 및 '24년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중복 적용 불가)

(13)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소득법 §55①)

현 행		개 정 안	
□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조정	
과 세 표 준	세 율	과 세 표 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10억원 초과	45%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4)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소득법 §59)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55%</li> <li>-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30%</li> </ul> </li> <li>○ 공제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li> <li>- 총급여 3,300만원 ~7,000만원 이하: 74만원~66만원*</li> <li>* <math>\text{Max}\{74\text{만원} - (3,300\text{만원 초과 급여액} \times 0.8\%), 66\text{만원}\}</math></li> <li>- 총급여 7,000만원 초과: 66~50만원*</li> <li>* <math>\text{Max}\{66\text{만원} - (7,000\text{만원 초과 급여액} \times 1/2), 50\text{만원}\}</math></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input type="checkbox"/> 최고 급여구간 공제한도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총급여 7,000만원 ~1.2억원 이하: 66~50만원*</li> <li>* (좌 동)</li> <li>- 총급여 1.2억원 초과 : 50~20만원*</li> <li>* <math>\text{Max}\{50\text{만원} - (1.2\text{억원 초과 급여액} \times 1/2), 20\text{만원}\}</math></li> </ul>

<개정이유>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작 성 자

- 투자종합상담실 국세청 파견관 박지현

KOTRA자료 22-101

## 외국인투자 관련 조세정책동향

2022년 하반기

발행인		유정열
발행처		KOTRA
발행일		2022년 10월
주소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06792)
전화		02-1600-7119(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
문의처		투자종합상담실 (02-3497-1059)
I S B N		979-11-402-0388-8 (95320)



Copyright © 2022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